

2020년도 제2회 수도권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수도권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0년 8월 7일
수도권기상청장

1. 선발예정인원

| 직무분야 | 임용예정직급 | 선발예정인원 | 임용기간 | 임용예정부서(근무지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상민원 | 한시임기제 9호 (주 20시간 근무) | 1명 | 임용일(2020년 10월 중) ~ 2021.12.31 |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(경기도 수원시) |

※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 인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

2. 주요업무분야

| 직무분야 | 임용예정직급 | 담당예정 업무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상민원 | 한시임기제 9호 (주 20시간 근무) | - 기상자료의 증명·제공 및 보급, 상담 -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, 견학프로그램 개발·운영 -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|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 응시자격 요건 [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(2020. 9. 18. 예정) 기준]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<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>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 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

나. 응시자격요건

| 직무 분야 | 임용예정 직급(직류) | 임용예정 부서 | 선발예정인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|
| 기상민원 | 한시임기제 9호 (기상) |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| 1명 |
| 주요업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상자료의 증명·제공 및 보급,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, 견학프로그램 개발·운영 | | |
| 필요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공 통 역 량)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(직급별 역량) 과업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헌신 (직렬별 역량) 정보관리능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력 | | |
| 필요지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상 및 기후변화 등 대기과학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, 자료관리 능력 워드프로세서,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및 고객응대 요령 | | |
| 응시 자 격 요 건 | 경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월 이상 기상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(최근 10년 이내[2010.8.7. 이후] 경력에 한함) | |
| | 우대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경력]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(최근 10년 이내[2010.8.7. 이후] 경력에 한함) [자격증]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[자격증]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| |
| | 가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 ※ 2010.1.1. 이후 실시된 시험 / 만점의 3% 부여 | |

【 공 통 】

- 응시자격요건(경력)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의 계산 및 소지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2020.9.18.) 기준으로 판단함
-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,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(2020.8.18.)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

【 경력의 범위 】

- '경력'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
- '경력'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
 -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(석·박사)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
 -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- '경력'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(재직)증명서(근무처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고용형태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 명시)* 제출
 - *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
 - 예) 0000.00.00~0000.00.00/ 00청 00과/ 연구원(전일)/ 기상기후해설
 -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
 -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또는 도장), 연락처 반드시 기재
 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
 - ※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 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-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(2020.8.7.)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 - ※ 2010.8.7.부터 2020.8.6.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
-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,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)로 보완가능
 - ※ 보완서류 중 '폐업사실증명서' 및 '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' 중 1종은 필수 제출

【 우대요건 】

- 기상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(최대 2년 6월, 연차별 차등우대)
 - ※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)
 - ※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
- 관련분야 자격증
 - 응용지질기사, 기상기사, 기상감정기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, 기상예보기술사
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
 -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정보처리운용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워드프로세서

【 가 점 】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
 -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
 - ※ 2010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(2020.8.18.)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)

4. 법률적 근거

- 「국가공무원법」(법률 제16905호)
- 「공무원임용령」(대통령령 제30493호)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(대통령령 제30200호)
- 「공무원임용규칙」(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)
- 「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)

5.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「자체 서류전형 기준」에 따라 정성·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(「공무원 임용시험령」 제29조 제6항)
 - 「자체 서류전형기준」 평정요소
 -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요건, 가산점
 - ※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, 원서접수 마감일(2020. 8. 18.)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2차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| 구분 |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개별 면접 (30분 이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질의·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·중·하 평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평정요소: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0조 제2항)
 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 -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'상'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('상'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)
 - ※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,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

6. 시험일정

- 시험공고: 2020. 8. 7.(목) ~ 8. 18.(화)
- 원서접수: 2020. 8. 13.(목) ~ 8.18.(화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: 2020. 9. 10.(목)
- 면접시험일: 2020. 9. 14.(월) ~ 9. 18.(금) 기간 중
 -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: 2020. 10. 6.(화)
 - ※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「채용·인사」란에 게재
 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7. 응시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일시 및 방법

- 접수일시: 2020. 8.13.(목)~8.18.(화) 09:00~18:00/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등기우편접수 주소: (우)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,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
 - 등기우편발송 시 겹봉투에 반드시 ‘응시원서 재중’ 이라고 기재
 -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- 문의전화: 031-8025-5006(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)

나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,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[붙임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aimable52@korea.kr)로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.
 -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(예정): 2020. 10. 6. ~ 11. 5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이력서상의 경력·자격증 등의 기재사항과 제출한 증명서류의 목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·자격증 등의 요건은 미인정함
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4조의2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.
-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
다.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: [붙임]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

8. 임용예정일, 채용기간 및 보수

- 임용예정일: 2020년 10월 예정이나,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채용기간: 임용예정일 ~ 2021. 12. 31
 - ※ 「공무원임용령」 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

○ 근무시간: 주 5일 20시간 근무

※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일 4시간 근무(오전[09:00~14:00] 또는 오후[14:00~18:00]) 유형으로 근무하되, 임용권자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

○ 근무장소/부서: 수도권기상청(경기도 수원시)/기후서비스과

○ 신분: 한시임기제9호공무원

○ 보수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| 등급 | 적용 대상 공무원 | 봉급기준액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한시임기제 9호 |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| 1,667,900 |

-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주 20시간 적용시 월 833,950원임

○ 수당: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고,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산정 지급

※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

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.
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(조회)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.

-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(고용·국민·건강·산재보험)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 발급)를 제출 받아 확인 예정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 -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☎ 031-8025-5006

[붙임] 응시자 제출서류 1부.